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공제부금 지원〉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7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공제부금 지원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

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2항).

Ⅲ. 검토의견

1. 지방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공제부금 지원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현행법 제35조의5제1호1)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
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u><신설></u>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① (현행 제목 외 부분과 같음) ② 정부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²⁾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및 근로자 등이 일정 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현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이 신규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상품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등 2개 상품이 있는데, 내일채움공제는 3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기업이 근로자 납부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여(근로자 및 기업의 납부액 합계가 월 최소 34만원 이상이어야 함)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5년의 가입기간 동안 근로자가 매월 10만원~5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기업이 근로자 납부금의 20%를 납부하여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임³⁾.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상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으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 운영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품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의 경우 청년 및 기업의 공제부금 납부 외에 정부도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지원하였음.

[표 1]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 상품 현황

구 분		내일채움공제 ('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22, 한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3, 한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4.10~)
가입 대상	재직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재직자
	연령	제한없음	만 15~34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제한없음
	소득	-	-	연 3,600만원 이하	-
	업종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3년	5년
납입금액		근로자(1) : 기업(2이상) (월 최소 34만원)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	근로자(1) : 기업(0.2) (근로자 10~50만원, 기업 2~10만원)
수령금액		1,224만원+이자	3,000만원+이자	1,800만원+이자	최대 4,02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정부가 각각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장기근속 의향 및 재직 만족도가 상승한 사례⁴⁾를 참고할 때, 개정안은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내일채움공제 사업운영 만족도 설문결과 (주정책과평가, '22.12월)

- (장기근속 의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장기근속 의향 85.8%
- (재직 만족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미가입자 대비 재직 만족도 78.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개정안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⁵⁾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특정하여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및 수도권·지방 소재 중소기업 비청년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 상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계층이 정책적 배려 대상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중소기업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이라 함) 소재 중소기업을 정책적인 배려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①인력지원사업 수행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한 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의2⁶⁾, ② 비수도권 지역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⁷⁾, ③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지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

원사업 수행 시 비수도권 소재 지역중소기업 우선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⁸⁾, ④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권자를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 한정 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⁹⁾ 등이 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을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법으로는 ①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¹⁰⁾, ②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

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① 수도권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관할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10)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¹¹⁾, ③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취득 관련 국세·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¹²⁾ 등이 있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지방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수행방법의 적절성, 의무 규정방식으로 인한 국가의 의무지출 증가가 향후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운영 중인 공제상품의 가입자수 및 기업·근로자의 납입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제부금의 2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소요는 내일채움공제 19억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0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53억 7,800만원 등 연도별 72억 9,800만원 가량으로 추계됨.

- (내일채움공제) 1,920백만원

* 산식: 1인당 연간 공제부금(기업(3,240천원+근로자(1,464천원))×20%×2,041명¹⁰⁾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5,378백만원

* 산식: 1인당 연간 공제부금(기업(924천원)+근로자(4,620천원))×20%×4,851명¹³⁾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정책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 불만증가, 정책불신 확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부의 공제부금 지원근거는 마련하되 실제 지원 여부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자산형성 목적의 정부 지원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 중인 점과, 소득요건과 무관한 별도 자산형성 사업 신설시 타 정책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13) 참고: 2024년 가입인원 및 비수도권/청년 비율(누계)

(단위: 명, %)

구분	신규가입자 ('24)	비수도권 비율	청년 비율	지원인원
내일채움공제	11,182	54.0	33.8	2,04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41,955*	38.8	29.8	4,851

주: '24.10월 신규 출시 상품으로 '25.7월말 기준 월평균 가입자×12개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사업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가. 인력지원사업

○ 예산사업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개요	우대사항	'25년 예산 (백만원)
일반회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신진연구 인력채용지원	■ 채용 신진* 연구인력에 대하여 기준연봉의 50% (3년 이내) 지원 *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기업 50%	12,462
		고경력연구 인력채용지원	■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에 대하여 연봉의 50%(3년, 0.5억 이내) 지원 *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신규과제 선정시 지역기업 50%	10,293
중진기금	연수사업	연수사업	■ 중소기업 재직자 및 경영자 대상 직무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지방 소기업 연수비 할인(50%)	23,785

○ 비예산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방식	규모	우대사항
신규 병역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공업·광업·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신청→평가 →순위부여→추천	2,570개사 (‘24)	선정평가시 가점 * 시·군소재기업(5점), 인구감소지역(4점) * (참고) 120점 만점

나. 일반적인 우대 사업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개요	우대사항	'25년 예산 (백만원)
일반회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역량강화	일부 유형(190억)의 경우 지역별 모집·선정 절차 적용	61,386
	벤처캐피탈 선진화	지역 엔젤투자 허브 운영	■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권역별 엔젤투 자허브를 구축운영	비수도권 지원사업	1,440
지특회계	지역특화 산업육성	시군구연구 산업육성사업	■ 인구감소지역 등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인구감소 지역 등 지자체 지원사업	31,000
	지역혁신선 도기업육성 (R&D)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 지역주력산업 분야 혁신 성·성장성이 높은 (예 비)선도기업 중심 산학연 협력 R&D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13,720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 력을 보유한 잠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7,840
중진기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지방계정)	■ 지역 소재 중소·벤처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전용 벤처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자체 지원사업	200,000
	재도약 촉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 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 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경제 활성화 촉진	5개 광역 지자체 지원사업 (지역 AI사업단)	35,000 (2차 추경)